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 11. 16

조례 및 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1. 11. 5
- 나. 제안자 : 이장우 의원의 5인
- 다. 회부일자 : 91. 11. 13
- 라. 상정일자 : 91. 11. 14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제5조 현재의 달서구 기구 조직에 근거한 지방자치법만을 적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지방자치 발전과 재원확보를 위해 달서구 산하 각종 기관 설치에 대비하여 미리 조례로 정하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의 단체나 기관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감사나 조사시 대상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 및 제137조와 제138조를 확대 적용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과 동법 제137조 및 제138조를 확대 적용하여 각종 기관설치에 미리 대비하여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내용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성

현행 조례 제5조는 조례 제정시 현재의 달서구 기구조직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해 달서구 산하에 설치될 수 있는 각종 기관신설에 대비하여 미리 조례로 정하므로서 기관설치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구청장이 위탁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여 차후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대상기관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찬성자 : 이기도, 이장우, 최학득, 하종수, 류광현, 류병노의원

나. 반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심사보고서 유첨

가. 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